考試界

2015년 4월호 통권 698호

발행인 겸 편집인

鄭相薰

편집위원

法博・건국대 명예교수金 鐵 容

法博・고려대 명예교수・학술원회원鄭 東 潤

法博・서울대학교 총장 成 樂 寅

法博·연세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白 泰 昇

 政策博・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成 成 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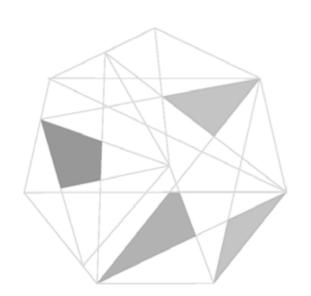
편집실무위원

제54회 사법시험 수석 이 호 영

제55회 행정고시 수석 이 영 희

제44회 외무고시 수석 김 현 주

편집국장 全 炳 周





간통죄의 폐지에 즈음하여



정현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소장
·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간통죄라는 범죄는 사라졌다. 간통죄는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논쟁거리가 되었던 사회문제였기에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민 대다수의 관심을 끌었다. 장기간의 존폐논쟁 속에서 간통죄는 점차 위헌결정의 방향으로 기울어 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측되었지만 전격적 폐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기존 간통죄로형을 확정 받았던 사람의 재심 청구가 잇따르는 반면,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보도되기도 하고 후속입법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형법에서 간통죄의 역사는 100년이 넘는다. 애초에 간통죄는 여자의 불륜을 처벌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905년 4월 20일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 제265조에서는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 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였고, 일제시대인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제11호 조선형사령으로 의용한 구형법 제183조에서도 간통한 유부녀만 처벌되고 남자는 처벌에서 제외되었다. 1953년 제정형법에서 남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남녀 쌍벌'규정인 제241조가 생겨났다. 여자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남녀불평등처벌주의는 오늘날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을 볼 때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